

2019 교정학 실전 동형 모의고사 수정사항(정오표)

010p 05번 문제 ①번 지문 수정

① 범죄횟수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횟수로 한다.

→

① 범죄횟수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횟수로 한다.

011p 14번 문제 ②번 지문 수정

② 징역은 금고와 달리 정역에 복무할 의미가 ~~

→

② 징역은 금고와 달리 정역에 복무할 의무가 ~~

015p 17번 문제 ④번 지문 2째줄 수정

~~ 업무로 인한 것이 불과하다

→

~~ 업무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

020p 10번 문제 [보기1]을 아래와 같이 수정

→

[보기1]의 () 안의 ㉠, ㉡, ㉢, ㉣을 삭제(→ 괄호만 남길 것)

049p 16번 문제 ③번 지문 수정

③ 수형자 자치제는 부정기형제도 및 가석방제도 하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혼거제를 필연적 조건으로 하며, ~~

→

③ 수형자 자치제는 혼거제를 필연적 조건으로 하며, ~~

049p 20번 문제 ②번 지문 2째줄 ~ 3째줄 수정

~~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.

→

~~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.

087p 제10회 09번 해설 ②번 수정

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의 기간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,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(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3항).

→

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(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2항·제3항).

087p 제10회 09번 해설 * 보호실 수용 제2항, 제3항 수정

· 제2항 :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· 제3항 :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,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→

· 제2항 :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· 제3항 :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087p 제10회 09번 해설 * 진정실 수용 제2항, 제3항 수정

· 제2항 :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. 다만,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· 제3항 :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12시간 이내로 하되,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→

· 제2항 :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. 다만,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· 제3항 :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096p 06번 해설 ①번 수정

① 과료는 ~~ 으로 한다(동법 제47조).

→

① 과료는 ~~ 으로 한다(형법 제47조).

096p 06번 해설 ③번 수정

③ 벌금형의 시효기간 ~~ 이다(제78조).

→

③ 벌금형의 시효기간 ~~ 이다(동법 제78조).